

의안번호	제790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7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연철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일

#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0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일  
발 의 자 : 연철흙,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전원표, 황규철,  
박상돈

## 1. 제안이유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라. 조례안 예고 : 2021. 6.22. ~ 2021. 6.28.(의회 홈페이지)

##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설비 및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2. 지역 방송사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항상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2. 비용발생 요인

-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보강, 교체
  - 재난 예보·경보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 시설 보강,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제1항
  -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2 ~ '26(5년간) 추계

- 현재 예·경보시설 572개소에 매년 신규로 10개소 설치하여 26년까지 총 622개소 운영
- 기존 572개소에 대해 내구연한 5년마다 보수보강 실시(115개소×5)
- 재난 예보·경보시설 신규설치  
 $50\text{백만원} \times 10\text{개소} = 500\text{백만원}$
- 재난 예보·경보시설 보수보강  
 $25\text{백만원} \times 115\text{개소} = 2,875\text{백만원}$

나. 추계 결과 : '22년부터 향후 5년간 16,875백만원 소요  
연 3,375백만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40%, 시·군비 60%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율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출	16,875	3,375	3,375	3,375	3,375	3,375
재난 예보·경보시설 신규설치	2,500	500	500	500	500	500
재난 예보·경보시설 보수, 보강	14,375	2,875	2,875	2,875	2,875	2,875